

주요국의 시공자격제도

한 나라의 건설업 관련 제도는 그 나라의 건설산업 및 관련 부문에 대한 규제 및 지원의 정의와 성격, 그리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 나아가서는 자국의 건설 시장을 보호·육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과 그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는 개방화의 거센 물결을 맞게 되었고 우리 경제도 세계화의 국가적 기조에 발맞추어 그동안 견지해 왔던 보호의 장벽을 벗어던지게 되었다. 건설산업 역시 예외일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도 1996년부터의 단계적인 개방 일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외국의 건설 관련 제도를 고찰하는 일은 시장 개방이 외국 건설업의 우리나라 진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전제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조사 연구는 외국의 건설 시장, 제도, 개발 계획 등 외국 건설 정보 구축의 제1보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 조사 연구는 특별히 주요 외국의 건설업 면허제도, 건설업체 등급제도 등 가장 기초적인 시공자격제도의 조사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건설산업 혹은 외국의 건설 제도 일반에 대한 자료집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자료의 폭과 깊이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작업은 후속 조사 연구를 통하여 계속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도 축적되는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현황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 보완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사 연구가 외국 건설 정보 구축을 향한 시금석으로서 유용하게 읽혀지기를 바란다.